

3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법률(안)입법예고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공고제 1998-115호 1998. 3. 20.

개 정 이 유

건설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유지관리업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중 전문 건설업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련 조항에 준용한 규정을 정리하고 관리주체가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하여 민간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며,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관리주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을 점검 또는 진단실시자가 통보토록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유지관리업이 건설업중 전문건설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준용한 규정을 정리함.
- 나. 관리주체가 작성·제출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년1회 이상 확인토록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

시키고자 함.

- 다.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관리 주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한 것을 점검 또는 진단 실시자가 통보토록 하여 관리주체가 이해관계로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.
- 라.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 계속 공

사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을 최종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 하여 진단의 중복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.

마. 설계도서 등의 제출의무에서 국방 등 보안상 필요시 예외 규정을 신설함.

바.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유지관리와 건설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.

사.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, 명령에 위반한 때 등에 대해 시정이

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하여 지도·감독을 강화함.

아.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벌칙의 준용 규정이 없어 효력상 분쟁 여지가 있는 벌칙 규정을 보완함.

의견제출

이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 : 건설안전심의관실 시설안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택회보